

서울고등법원 2022. 9. 23 선고 2021나203570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9. 23 선고 2021나2035705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0가합3754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심

담당변호사 김성일

피고, 항소인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길

담당변호사 이주형

변론 종결2022. 8. 26.

판결 선고2022. 9. 23.

제1심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0가합37546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과 D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D 명의의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2020.

4. 21. 체결된 채권양도 및 근저당권양도계약을 290,663,013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D에게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M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의 배당금지급채권 중 290,663,013원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다. 피고 B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92,307,6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 C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 B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13행의 "이 사건 제1 근당권"을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으로, 4쪽 6행의 "이 사건 각 부동산들에"를 "이 사건 토지들에"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5쪽 2행의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다음에 아래『』부분을 추가.

『[피고들은, L이 D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할 당시 S이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D이 S에 대하여 가지는 5억 원 상당의 보증금채권도 D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L은 2019. 3. 15. D으로부터 5억 원을 변제일을 지급일로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 또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위 차용 당시 S이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이 사건 채권양도 및 근저당권양도계약에 따라 D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이상 S에 대한 위 5억 원 상당의 보증금채권도 함께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 및 근저당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D이 S에 대하여 가지는 위 보증금채권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 담보부 채권과 별도의 적극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에 의하여 수익자가 새로 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사해의 저당권이 말소되고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인 저당권 취득의

원인행위를 취소한 후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청구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할 것을 명하는 형태가 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49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 이후 전득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수익자와 전득자 중 누구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해행위로 인하여 수익자가 취득한 목적물이 이미 전득자에게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자로서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반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아울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수익자, 전득자 별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악의의 수익자와 전득자는 각자 전액에 대하여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된 재산을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통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시키고자 하는 채권자취소권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로서의 수익자나 전득자의 가액배상의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의 관계에 있다(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 중 일방으로부터 일탈된 책임재산의 반환을 받음으로써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목적이 달성될 경우에는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구상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다른 일방의 채권자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도 소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갑 제4호증의 1, 을 제1호증, 을 제11호증의 3, 을 제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이 2019. 12. 17.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M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피고 B은 위 경매절차 진행 중인 2020. 8. 26. 이 사건 채권양도 및 근저당권양도계약에 따라 양수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 중 25/39 지분과 192,307,690원 상당의 피담보채권 전액을 피고 C에게 양도하였고 피고 C이 위 경매법원에 위 근저당권 지분과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채권자승계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이후 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피고 C에게 3순위로 576,023,427원이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원고가 피고 C에게 배당된 배당금 중 310,513,721원에 대하여 2020. 12. 16. 지급금지가처분 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20카합50830호)을 받은 사실, 위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위 배당금 310,538,926원이 공탁되어(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년 금제130호) 피고 C이 위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과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 및 근저당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290,663,01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 및 전득자인 피고 C은 D에게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M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의 배당금지급채권 중 290,663,013원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으며, 수익자인 피고 B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192,307,6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상회복청구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판사서태환

판사서삼희

판사김민아

별지